

의안심사보고서

(의안번호 105호)

1. 의안명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97. 12. 12

나. 제출자 : 중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 : '97. 11. 13

라. 위원회 상정 : '97. 12. 16

3.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총무국장)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 단체가 제출한 감면조례 조정 의견을 정부 부처에서 검토조정하고 내무부에서 일괄 허가함에 따라 중구구세 감면 조례를 전면 개정코자 함.

나. 주요골자

- 현행 7장 20개조를 6장 28개조로 개편하고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한 사항이 대부분 수용 되었으며,
- 현행 제11조 주차장에 대한 감면 규정을 주차전용 건축물 감면 규정과 주차전용 토지감면 규정으로 세분화 하고,
- 제13조 고속철도건설사업 감면 규정을 삭제 하였으며,
- 제16조 개발제한 구역내 취학정비 사업으로 신설하는 등 개정안 제17조부터 ~ 제24조와 26조는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다. 관련법 검토

- 울산광역시 지방세 13400-388 ('97. 10. 13)호의 지방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 일괄 허가

라.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감진상)

- 각 자치단체별 지역실정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대폭 보완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조속히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5
----------	-----

제출년월일 : 1997. 12.

제 출 자 : 중구청장

1. 제안이유

- 구세감면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각지방자치 단체가 제출한 감면조례 조정의견을 정부관계 부처에서 종합적으로 검토·조정하여 마련한 지방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내무부에서 일괄 허가함에 따라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건 관련조례를 전면개정코자 함

2. 법적근거

- 울산광역시 지방세 13400-388('97. 10. 13.)호의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조례(안) 일괄허가

3. 주요내용

- 향교재단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및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감면 삭제
- 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 종합지원 센터에 대한 감면의 9개조항 신설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참고사항 : 붙임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상 기타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울산광역시 중구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제2조(국가유공자등에 대한 감면) ①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②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새로운 승용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에 소유하던 승용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에는 승용자동차 1대를 소유한 것으로 보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제3조(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상이군경회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4조(음성나환자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 음성나환자집단촌에 거주하는 나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집단촌안의 주거용 부동산(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5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6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3장 사회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7조(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회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거나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교육시설

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교육시설
2.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건설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사회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사회교육시설
5.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6.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7.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제8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9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5로 하고,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울산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울산광역시장이 따로 지정한 주거용 부동산
3. 문화재보호법 및 울산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 구역안의 부동산
4. 전통건조물보존법에 의하여 지정된 전통건조물과 그 부속토지 및 전통건조물보존지구안의 부동산

제4장 대중교통 지원을 위한 감면

제10조(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①관계법령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근린생활시설등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승인서교부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한다.

제11조(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전용토지와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이상인 것에 한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주차장의 연간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연간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직전연도 6월 1일부터 당해연도 5월 31일까지)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2. 연간수입금액의 계산기간중에 사업을 개시하는 등 그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간수입금액으로 한다.

$$\text{연간수입금액} = \frac{\text{영업기간중의 수입금액} \times 365}{\text{영업기간(일수)}}$$

3. 토지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로 하고,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 가액은 시가표준액 또는 법인장부가액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제12조(매매용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을 말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가 매매용으로 등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면제한다.

제13조(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여객자동차터미널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터미널 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5장 지역발전지원등을 위한 감면

제14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5세대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임대주택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의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영구임대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였거나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지 아니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한다.

제15조(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도시계획법제2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등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6조(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도시계획법 제7조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건축물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17조(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 ①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

를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중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제18조(아파트형공장에 대한 감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9조(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한다.

1.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시장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사용승인서교부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0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

하고, 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하며, 울산광역시중소기업지원센터가 그 고유업무 수행을 위하여 받는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면제한다.

제21조(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감면)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22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3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쟁기념사업회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기념탑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고, 동 사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면제한다.

제6장 보 칙

제24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중 종합토지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25조(감면신청등) ①이 조례에 의하여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울산광역시 중구구세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구세를 감면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한다

“꿈과 미래의 큰 울산, 변화하는 중구”
울산광역시중구

우 681-220 / 울산광역시 중구 북산동 180-1 / (0522) 90~0288 / 전송 561 / 당 당:한영필

문기번호 지방세 13400 ~ 264

시정일자 1997. 11.6. (년)

(경우)

수신 내부결재

참조 (제1안)

취급	구청장		
보존	년		
부구청장	 법무통계계장 공보계장 협조		
국장			전결
과장			
계장			
기안	한영필	협조	
		자체문서심사관	

제목 입법예고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안)을 개정하기 위하여 법무행정관리규정 제5조 및 제6조 규정에 따라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 불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97. 11. 7. ~ '97. 11. 26.(20일)
2. 예 고 방 법 : 공보시재

붙임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입법예고(안) 1부. 끝.

(제2안)

발신 곳 문화공보실장

제목 입법예고(안)공보제재 의뢰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법무행정관리규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안) 1부. 끝.

울산광역시중구구청장

"I ♥ ULSAN (나는 울산을 사랑합니다)"

울산광역시

우680-701울산광역시남구신정1동646-4전화(0522)228-2311FAX:228-2319담당김경재

문서번호 지방세 13400- 388
시행일자 1997. 10. 13. (년)

수 신 수신처참조
참 조 지방세과장

선 결	구장장		지 시	
접 수	일자 시간	1997. 10. 13.	결 재	
	번호	1903		
처리과			공 탐	
담당자	김경재			

제 목 지방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일괄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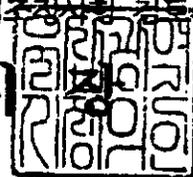
1. 내무부 세제 13400-337('97.10.10)호와 관련입니다.
2. 세제13400-250('97.7.24)호의 지방세감면조례 일괄조정허가계획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감면조례 조정의견과 지방세감면조례개정허가 신청사항 및 정부 관계부처에서 지방세감면조례에 반영을 요청한 사항 등을 시·도 담당공무원 참여하에 종합적으로 검토조정하여 마련한 지방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첨부와 같이 일괄허가하니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얻은 것으로 보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감면조례개정안을 마련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시행하기 바랍니다.

3.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감면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제출한 의견중 이번 에 일괄허가하는 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을 첨부과 같이 함께 송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 부 :
1. ○○특별시(광역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1부.
 2. ○○특별시(광역시)○○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1부.
 3. ○○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1부.
 4. ○○도○○시(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1부
 5.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개정요구사항중 미조정사항 검토의견 1부. 끝.

울산광역시

수신처 : 더0105



00특별시(광역시)00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00특별시(광역시)00구세감면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상 기타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00특별시(광역시)00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제2조(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①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②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새로운 승용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에 소유하던 승용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에는 승용자동차 1대를 소유한 것으로 보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

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제3조(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상이군경회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4조(음성나환자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 음성나환자집단촌에 거주하는 나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집단촌안의 주거용 부동산(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5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6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3장 사회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7조(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회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거나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교육시설 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1.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교육시설
2.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건설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사회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사회교육시설
5.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6.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7.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제8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9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5로 하고,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특별시(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특별시장(광역시장)이 따로 지정한 주거용 부동산
3. 문화재보호법 및 ○○특별시(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 구역안의 부동산
4. 전통건조물보존법에 의하여 지정된 전통건조물과 그 부속토지 및 전통건조물보존지구안의 부동산

제4장 대중교통 지원을 위한 감면

제10조(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①관계법령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근린생활시설등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승인서교부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한다.

제11조(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전용토지와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이상인 것에 한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주차장의 연간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연간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직전연도 6월 1일부터 당해연도 5월 31일까지)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2. 연간수입금액의 계산기간중에 사업을 개시하는 등 그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간수입금액으로 한다.

$$\text{연간수입금액} = \frac{\text{영업기간중의 수입금액} \times 365}{\text{영업기간(일수)}}$$

영업기간(일수)

3. 토지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로 하고,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 가액은 시가표준액 또는 법인장부가액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제12조(매대용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을 말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가 매대용으로 등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면제한다.

제13조(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여객자동차터미널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터미널 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5장 지역발전지원등을 위한 감면

제14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5세대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임대주택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영구임대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였거나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지 아니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한다.

제15조(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도시계획법제2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등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6조(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도시계획법 제7조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건축물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17조(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 ①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중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제18조(아파트형공장에 대한 감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
 률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
 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
 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
 한다.

제19조(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의구
 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
 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한다.

1.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시장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
 에 대한 재산세는 사용승인서교부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
 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0조(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 ○○시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
 영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시신용보증조합이 과세기준일 현
 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
 을 경감하며, ○○시신용보증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
 한다.

제21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을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하며, ○○시중소기업지원센타가 그 고유업무 수행을 위하여 받는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면제한다.

제22조(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감면)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23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4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쟁기념사업회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기념탑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고, 동 사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면제한다.

제○○조(서울특별시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무허가건물 정비에 대한 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 대상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허가건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 후에 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당해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조(서울특별시 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①대통령경호실법시행령 제2조의2제1호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②전직대통령 또는 그 미망인이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하고, 그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대상으로 한다.

제○○조(부산광역시 부산교통공단에 대한 감면) ①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산교통공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②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산교통공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하고, 동 공단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면제한다.

제○○조(부산광역시 부산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안의 자경농지에 대한 불균일과세) 부산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로서 지정된 지역안의 토지로서 부산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일(부산광역시고시제95-258 호, '95.10.16)이전에 취득한 자경농지중 농지소재지 구 및 그와 연결한 시·군·구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km이내의 지역에 과세기준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개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농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〇〇조(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 대한 감면) ①2002년 부산아시아경기대회의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제14회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4회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 대하여는 면허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〇〇조(대구광역시 산격·검단지구 종합유통단지조성사업에 대한 경감) ①대구광역시가 조성한 산격·검단지구 종합유통단지 내에 입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입주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를 경감한다.

1. 최초 토지취득일부터 5년이내 취득하는 입주시설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토지를 최초로 취득한 날부터 5년간(토지취득일전에 그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입주시설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신축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최초로 취득하는 입주시설용 토지 및 그 토지취득일부터 5년이내에 취득하는 입주시설용 토지에 대하여는 최초 토지취득일부터 5년간(최초 토지취득일이전에 그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아 지방세법 제234조의9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계약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입주시설용 토지에 대하여는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날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무역센터 및 종합전시장 시설
2. 섬유제품관, 일반의류관, 가전제품관 등 도매단지 시설

- 3. 대기업관, 중기업관, 지역기업관등 기업관 시설
- 4. 백화점·생필품·철강·화물터미널의 물류(집배송·하역·물품분류·보관·가공·포장·정보처리 및 사무실 등을 말한다)시설

제〇〇조(인천광역시 수도권신국제공항건설사업에 대한 감면) ①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이하 이 조에서 “신공항건설공단”이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되는 재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②신공항건설공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〇〇조(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동등 토지에 대한 감면)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동·용유동에 1988년 12월 31일이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동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1989년 1월 1일이후 상속받은 경우를 포함 한다)하여 소유하는 토지중 종합합산대상인 임야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〇〇조(광주광역시 소촌농공단지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부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소촌농공단지안에서 농외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동법 제 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2.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제〇〇조(광주광역시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등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및 평동공업단지(이하 이 조에서 "첨단산업단지등"이라 한다)안으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첨단산업단지등에서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지역 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공장의 사업용 부동산(기존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 토지의 취득일 전에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사업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최초의 공장용 토지를 취득한 날(최초의 공장용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그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사업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〇〇조(대전엑스포기념재단등에 대한 감면)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전엑스포기념재단 또는 대전세계박람회장안에 있는 자원활용관, 전기에너지관, 정보통신관, 자연생명관 및 번영관을 건립하여 운영하는 법인 (이하 이 조에서 "대전엑스포기념재단등"이라 한다)이 대전엑스포기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세계박람회장안에서 소유하는 건축물로서 그 사업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하는 사업을 포함하되, 꿈돌이동산, 곤도라, 모노레일 및 대식당등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영위하는 수익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고, 그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

조의15 및 제234조의16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2로 하며, 대전엑스포기념재단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면제한다.

제6장 보 칙

제〇〇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중 종합토지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〇〇조(감면신청등) ①이 조례에 의하여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〇호서식에 의한 〇〇특별시(광역시)〇〇구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〇〇(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구세를 감면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〇〇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〇〇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한다.

